KOSHA GUIDE

C - 96 - 2014

5. 설계변경 근거 및 사전 검토

5.1 설계변경을 위한 근거

- (1) 도급인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가설구조물의 공법이 설계에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가설구조물은 사용되는 재 료,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설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다)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 (라) 터널지보공
 - (마)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바)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2)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의 판단근거는 도급인이 해당공사에 대하여 게시 또는 제공한 다음 각 호의 입찰관련서류로 한다.
 - (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 (나) 입찰과정의 질의회시 내용
 - (다) 입찰공고문
 - (라)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 (3) 설계도면에 가설구조물공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도급인이 제공한 물량내역서가 가설구조물의 설계 조건을 표현하고 있다면 필요한 경우 그것이 설계변경의 근거가 된다.
- (4)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서만으로 가설구조물의 설계조건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이 설계변경 근거가 된다
- (5)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서에서 적용한 공법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당시에 도급인에게 그 판단을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며, 계약 이후에 발견된 때에도 동일하다. 질의를 받은 도급인은 계약 관련 법령 또는 상호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이 설계변경 근거가 된다.